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서울아리수본부

□ 총 1건 건의

□ 목 록

연 번	건의제목	건의부서
1	상수도원인자부담금제의 법적 기반 강화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한 수도법 개정 건의	급수설비과

법령 · 제도개선 건의사항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1. 상수도원인자부담금제의 법적 기반 강화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한 수도법 개정 건의 (급수설비과, '24. 1. 31.)	□ 변황 ○ 대규모 사업지구 등에 대하여 관련 수도법 등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처분 하였으나, 서울시 등 17개 지자체에서 다수 소송 패소 ○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판결 요지: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이중 부과에 해당하고, 재량행위로서 전부 또는 일부 공제 필요 ※ 대규모 사업지구 내 사업시행자의 수도시설 설치 공사를 원인 행위로 보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이중 부과로 판결	(환경부)
	 □ 문제점 ○ 수도법과 대규모 사업지구 관련 법률과 상호 상충 - 수도법 제70조(수도설치비용 부담은 수도 사업자)와 도시개발법 제54조(사업지구 내 수도시설의 설치 의무자의 상충으로 혼란 ○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으로 혼란 발생 - 수도법 제71조(원인자부담금)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로 규정할 뿐, 도시 개발법 등에서 사업시행자(사업 주체)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원인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(부담금부과의 원칙)에 위배 되어 이중 부과로 판결 - 또한, 수도법 제71조에 근거한 환경부 표준조례(개정, 2011, 11, 10,)가 원인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명시하지 않음 	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	□ 건의내용 ○ 법률의 구체화로 법적 기반 강화 - 대규모 택지지구 등의 수도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관련 법률 등을 고려하여 보강 필요 ○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기준, 범위, 대상의 명확화 - 대규모 택지지구 등의 수도시설 설치에 대하여 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중 부과 등에 위배 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 -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기존에 소요된 수도 시설의 설치비용, 장래 수도시설의 신·증설 유발 비용, 타공사·타행위 및 손괴자 비용의 유형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정의하여 부담할 자를 구체적으로 구분 ○ 대규모 개발사업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근거 확보 - 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설치하여야 하는 기반시설로서의 수도시설과는 별도로 사업 구역 외의 수도시설에 대하여 장래 신·증설을 유발함에 따른 부담금 부과 근거 확보 필요 □ 관련 규정 ○ 수도법(체70조, 제71조) ○ 도시개발법(제54조) ○ 수도법시행령(제65조) ○ 환경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·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(2011.11.10.) ○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(체2조) ○ 부담금관리 기본법(제5조)	

붙임 1 관련 규정

□ 수도법[제70조, 제71조]

제70조(수도 설치비용의 부담) 수도(급수설비는 제외한다)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. 제71조(원인자부담금)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시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(주택단지・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)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・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, 증설, 이설,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. <신설 2011. 7. 28.>

□ 도시개발법[제54조]

제54조(비용 부담의 원칙)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.

□ 수도법 시행령(제65조)

- O (제 $1 \cdot 2 \cdot 4$ 항) 부담금 부과 전 사전협의 및 부과 시 고지에 대한 사항
- (제3·5항) 부담금(신·증설 유발/손괴) 구성 항목
- (제6항) 조례 위임: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조례로 정함

제65조(원인자부담금)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(주택단지·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)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1. 3., 2017. 4. 11.>

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・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08. 1. 3.>

-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- 1.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 비용
- 2.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
- 3.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
- 4. 단수(斷水)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
- 5.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
- 6.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
- 7.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
-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・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한다. <신설 2008. 1. 3.>
-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 <신설 2008. 1. 3.>
- 1.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
- 2.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
-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**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**개정 2008. 1. 3.>

■ 환경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·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(2011. 11. 10.)
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원인자부담금"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.
- 가.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(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·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).

제4조 (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) 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- 1.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아기함으로써 취수장·정수장·배수지·가압장 및 송·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
- 2.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·배수시설의 신설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 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
- 3.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(건축물의 증·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).

□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1.7., 2010.7.15.>

- 1. "원인자부담금"(이하 "부담금"이라 한다)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.
- 가.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(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)

□ 부담금관리 기본법

제5조(부담금 부과의 원칙)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,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.

②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한다. <개정 2015. 12. 29.>